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4조(이익분배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34조(이익분배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</u>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p>1.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</p> <p>2. <u>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b></p>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<u>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</u>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</b></p>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